

# 한-EU FTA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2011년



서울본부세관 FTA

**설명회는 서명된 FTA 협정문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수출기업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한-EU FTA의 경우 정식 발효 시 협정문의 내용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적용이 필요합니다.**

# CONTENTS

- 1 FTA 특혜의 조건
- 2 인증수출자 제도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4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찾기

# 1장. FTA 특혜의 조건

# 1. FTA 특혜의 조건

**FTA is Not Free  
Conditionally Free**

# 1. FTA 특혜의 조건



# 1. FTA 특혜의 조건

## 1. 거래당사자 요건

■ 원칙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 예외 : 비당사국 중개인 개입(송장 발행)시에도 일정조건 하에 인정

\* 한-칠레, 아세안 FTA, 인도 CEPA :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송장 정보 명시

▶ FTA 협정 상

- 상품이 수출입 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FTA 협정 상 수출입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 신청의 주체
-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를 부담
-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니는 자

# 1. FTA 특혜의 조건

## 2. 운송 요건

### ■ 개념

- ▶ 원칙 : 수출당사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 제공
- ▶ 예외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3국 단순 경유 시 직접운송으로 간주
  - \* 단순경유 :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  
환적, 상품 보존 작업 이외의 가공 없을 것

### ■ 유형

- ▶ 직접운송요건 규정
  -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 한-EU FTA는 직접운송요건과 비당사국 경유 한도를 함께 규정
- ▶ 경유요건 규정
  - 한-칠레, 한-미국 FTA에서는 경유요건만 두어 전자 보다 운송요건 완화

# 1. FTA 특혜의 조건

## 3. 역내충분가공 원칙①

### ■ 역내가공 원칙

- ▶ 원칙 : 당해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함
- ▶ 예외 : 각 협정별로 지역제한, 품목제한, 전부 불인정 등 달리 정하고 있음

### ■ 역내가공 원칙 협정별 비교표

FTA	근거규정	요지
한·칠레	역외가공 불인정	-
한·싱	제4.3조 및 부속서 4B	4,625품목, 개성공단 한정
	제4.4조 및 부속서 4C	134품목, 지역제한 없음
한·EFTA	부속서   제13조 및 부록 4 제1조 외	품목·지역 제한 없음
	부속서   제13조 및 부록 4 제2조 외	267품목, 지역 제한 없음
한·아세안	부속서 3 제6조 및 양해각서	국가별 100품목, 개성공단 한정
한·인도	부속서3나	국가별 100품목, 개성공단 한정
한·EU	제12조3항 및 부속서 4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위임

# 1. FTA 특혜의 조건

## 3. 역내충분가공 원칙②

### ■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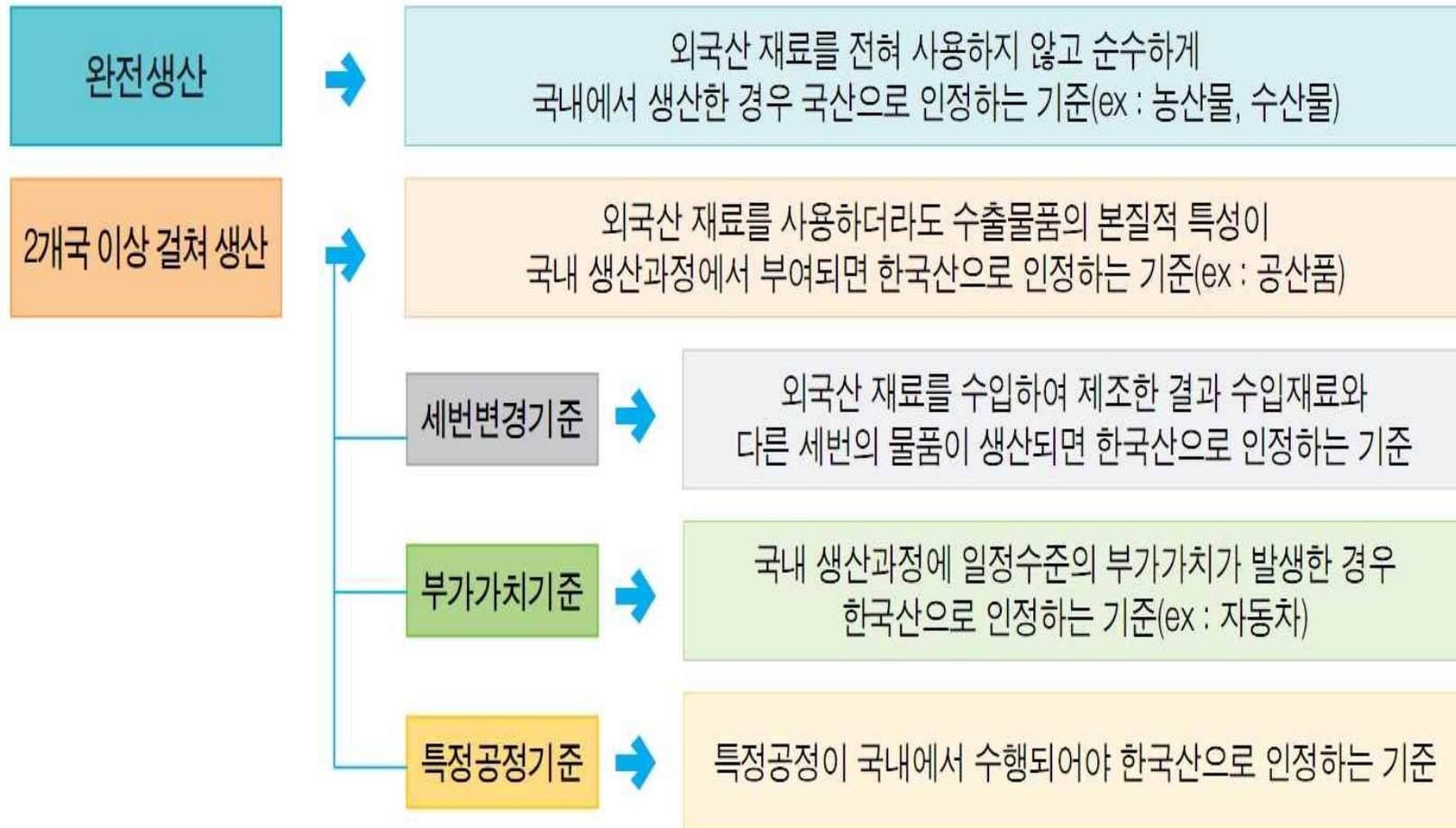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 ■ 협정별 비교표

FTA	근거규정
한·칠레	제4.13조(불인정공정)
한·싱	제4.16조(불인정공정)
한·EFTA	부속서 I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한·아세안	부속서3 제8조(불인정공정) 부록3 제2조(섬유 및 의류 불인정공정)
한·인도	부속서2-나, 제3.6조(불인정공정)
한·EU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1. FTA 특혜의 조건

## 4. FTA 협정에서 사용된 원산지결정기준



# 1. FTA 특혜의 조건

## 5. 원산지 증명

### 자율증명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서명하는 방식
- **한-EU FTA : 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증명 가능 (6,000유로 초과)**
- 한-EU, 한-칠레, 한-EFTA, 한-미 FTA

### 기관증명방식

- **세관, 상공회의소** 또는 기타 정부지정기관이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한-아세안, 한-인도, 한-싱가포르

# [참고] 한-EU FTA 자율증명 방식

## ■ 한-EU FTA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제16조

4. 송품장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COMMERCIAL INVOICE					
① Shipper / Exporter		⑧ No. & Date of invoice			
		⑨ No. & Date of LC			
② For Account & Risk of Messrs.		⑩ L/C Issuing bank			
③ Notify party		⑪ Remarks :			
④ Port of loading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50px; margin: 0 auto;"></div>			
⑤ Final Destination					
⑥ Carrier		⑦ Sailing on or about			
⑫ Marks and Numbers of PKGS		⑬ Description of Goods	⑭ Quantity/Unit	⑮ Unit-Price	⑯ Amount
⑰ P.O.Box :		<p style="text-align: center;">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sup>(1)</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2)</sup> preferential origin.</p> <p style="text-align: right;">.....<sup>(3)</sup></p> <p style="text-align: center;">(장소 및 일자)</p> <p style="text-align: right;">.....<sup>(4)</sup></p> <p style="text-align: center;">(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p>			
Cable address..... :					
Telex code :					
Telephone No. :					
		⑱ Signed by _____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sup>(1)</sup>)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sup>(2)</sup>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 본

# [참고] 한-아세안 FTA 등 기관발급 방식

## ■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①)

### ■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원산지소명서(규칙 별지 1호서식)

-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특례고시제2-2-5조 ③항)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 ■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②):선적일부터 1년이내

- ▶ 수출물품 선적완료전 신청시 구비서류
- ▶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사본
- ▶ 사유서 내용 입증자료(증명서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 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b>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 1. FTA 특혜의 조건

## 6. 자료 보관 의무

- 원산지증명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자료 보관 의무 규정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도록 규정

FTA	근거규정
한.칠레	제5장 제5.3조, 제5.4조
한.싱	5장 제5.5조
한.EFTA	부속서   제21조
한.아세안	부속서3 부록1 제13조
한.미	제6장 제6.17조
한.EU	제23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12조(자료 보관 및 제출), 제16조(협정관세 제한), 제22조 내지 제24조(처벌규정)

## 2장. 인증수출자 제도

## 2. 인증수출자 제도

### ▶ 인증수출자의 개념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 (정의)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에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

### (혜택)

- ①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자는 인증 받아야 원산지 증명가능,
- ② 한-아세안 FTA 등은 기관발급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 2. 인증수출자 제도

### ▶ 우리나라 인증수출자 제도 특징

####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3년
인증기관	서울본부세관 FTA집행총괄과	본부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 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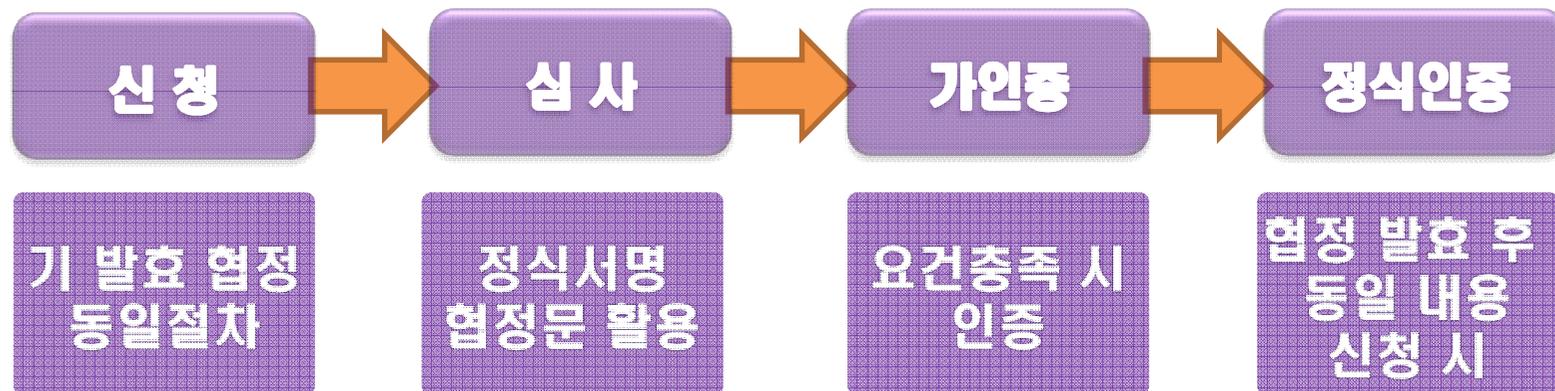
-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 한-EU 협정문
  - 원산지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2(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 FTA특례고시 제2-4-7조(인증신청 특례)~제2-4-11조(인증취소 및 청문)

## 2. 인증수출자 제도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暇)인증제도

#### ● 한-EU FTA 발효대비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暇인증제도 운영

- 한-EU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정 발효 전에 對EU 수출기업들이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하나
- **현행 규정 상 미발효 협정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불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만 한-EU FTA에 대한 포괄적 혜택 적용 가능]
- **기업의 한-EU FTA 대응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暇인증제도 시행 (10.8.2)**



## 2. 인증수출자 제도

### ▶ 인증과 증명의 차이

#### 인증수출자 인증

#### 인증의 대상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능력

① 수출물품 원산지 기준 충족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③ 서류보관 등 관리현황

④ 법규준수도

#### FTA 원산지 증명

#### 증명의 대상

해당 수출물품

① 수출물품 원산지 기준 충족



## 2. 인증수출자 제도 - 업체별

### 업체별 인증 심사요건 개요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메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①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 제9항)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4) **(범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③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 2. 인증수출자 제도 - 업체별

### ①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 매뉴얼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원재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li> <li>○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확인서 또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li> </ul> </li> <li>○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li> <li>-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li> </ul> </li> </ul>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② 원산지 기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li> <li>○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li> <li>○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li> </ul>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li> <li>-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li> </ul> </li> <li>○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li> </ul>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li> <li>②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li> <li>-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li> <li>-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li> <li>-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li> <li>-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li> <li>-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li> </ul> </li> </ul>	①프로세스작장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②서류작성작장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④ 원산지 증빙 자료 관리 (검증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li> <li>-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li> <li>-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li> <li>-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li> <li>-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li> </ul> </li> </ul>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 2. 인증수출자 제도 - 업체별

###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 여부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특례고시 제2-4-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갖춘 경우 심사생략)</li> </ul>	해당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15점)</li> <li>-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 교육 등) : 시간당 2점</li> <li>* 민간협회의 FTA 업무관련성, 과목의 적정성, 강사 전문성 등을 참고, 인증 심사 담당자가 인정여부 판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인정 과목</th> <th>인정 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원산지 결정기준</td> <td>·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td> <td>시간당 2점 (최대 10점)</td> </tr> <tr> <td>품목분류</td> <td>·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td> <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 </tr> <tr> <td>인증수출자</td> <td>·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td> <td>시간당 2점 (최대 10점)</td> </tr> <tr> <td>원산지 관리실무</td> <td>· 증명서 발급·작성 실무 ·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td> <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5점(관세업무 담당 변호사·관세사 : 20점)</li> <li>-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li> <li>*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li> <li>-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 이내 2점, 2년 이내 3점, 3년 이내 4점, 3년 이상 5점)</li> </ul>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10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10점)	원산지 관리실무	· 증명서 발급·작성 실무 ·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10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10점)														
원산지 관리실무	· 증명서 발급·작성 실무 ·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외부)전문가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대상 : 관세사·변호사(특례법 제13조 제9항) 등</li> <li>- (외부)전문가 지정시, 인증후 관리여부 사후관리</li> </ul>	원산지관리계약서 등														

## 2. 인증수출자 제도 - 업체별

###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여부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기관발급 포함)</li> <li>* FTA특례고시 별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li> <li>* FTA특례고시 별지 제5호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전산 파일 제출 가능)</li> </ul>	C/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 2. 인증수출자 제도 - 업체별

### ④ 처벌이력 등 확인

주요내용	확인 방법
①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 확인	본부세관 심사총괄과 공문 확인 등
②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③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본청, 관할세관 및 C/O 발급기관에 공문 확인 등

## 2. 인증수출자 제도 - 업체별

### ⑤ 필요 시 현지실사 주요 심사사항

구분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li> <li>○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에 따른 원산지 판정 시현</li> <li>○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li> <li>○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콘텐츠 등</li> </ul> </li> </ul>	
②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li> <li>○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 실태</li> </ul>	견본 확인

## 2. 인증수출자 제도 - 품목별

### 품목별 인증 심사요건 개요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2. 인증수출자 제도 - 품목별

### ① 수출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5개이내)를 선정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사전 검증시 확인한 협정·HS6단위 생략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li> <li>-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li> </ul> </li> <li>○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출(생산)품목 5개 이내 선정</li> <li>-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li> <li>-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li> <li>-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li> <li>-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li> <li>-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li> <li>-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li> </ul> </li> </ul>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제 품 생산공정 설명서 등

## 2. 인증수출자 제도 - 품목별

###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여부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 방법														
① (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특례고시 제2-4-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갖춘 경우 심사생략)</li> </ul>	해당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관리담당자용 업무매뉴얼 : 5점</li> <li>* 업체 원산지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기술</li> <li>-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5점)</li> <li>-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 시간당 2점</li> <li>* 민간협회의 FTA 업무관련성, 과목의 적정성, 강사 전문성 등을 참고,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정여부 판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인정 과목</th> <th>인정 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원산지 결정기준</td> <td>·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td> <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 </tr> <tr> <td>품목분류</td> <td>·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td> <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 </tr> <tr> <td>인증수출자</td> <td>·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td> <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 </tr> <tr> <td>원산지 관리실무</td> <td>· 증명서 발급·작성 실무 ·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td> <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5점 (<b>관세업무 담당 변호사·관세사 : 10점</b>)</li> <li>-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의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li> <li>*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li> <li>-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이내 2점, 2년이내 3점, 3년이내 4점, 3년이상 5점)</li> </ul>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 관리실무	· 증명서 발급·작성 실무 ·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 관리실무	· 증명서 발급·작성 실무 ·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외부)전문가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대상 : 관세사·변호사(특례법 제13조 제9항) 등</li> <li>- (외부)전문가 지정시, 인증후 관리여부 사후관리</li> </ul>	원산지관리계약서 등														

## 2. 인증수출자 제도 - 품목별

###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여부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기관발급 포함)</li> <li>* FTA특례고시 별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li> <li>* FTA특례고시 별지 제5호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전산 자료로 제출 가능)</li> </ul>	C/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 견서

#### ◆ 생산자 및 원재료공급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기록 유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3조)

## 2. 인증수출자 제도 - 품목별

### ④ 처벌이력 등 확인

주요내용	확인 방법
① 최근 2년간 법 제 13조제 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 확인	본부세관 심사총괄과 공문 확인 등
② 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 1항제 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 2. 인증수출자 제도 - 품목별

### ⑤ 필요 시 현지실사 주요 심사사항

구분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li> <li>○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li> <li>○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콘텐츠 등</li> </ul>	
②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li> <li>○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 실태</li> </ul>	견본 확인

## 3장.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 거래 단계별 원산지 증명서류



수출자

생산자

원재료공급자

관세 혜택



원산지 증명

COMMERCIAL INVOICE	
① Shipper / Exporter	④ No. & Date of invoice
② For Account & Risk of Mission	⑤ No. & Date of L/C
③ Tally party	⑥ L/C issuing bank
⑦ Port of loading	⑦ Remarks
⑧ Carrier	⑧ Sailing on or about
⑨ Marks and Numbers of PKGS.	⑨ Description of Goods
⑩ P.O.Box	⑩ Signed by
⑪ Cable address	
⑫ Telex code	
⑬ Telephone No.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 FTA 원산지 증명 제도의 특징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5개 이내)
3.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
    -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 \*\*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참조)
  -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전산시스템 보유 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 \*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
  - (전산시스템 미보유 시)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5.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 (별지 제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
2.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5개 이하)
3.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
    -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 \*\*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참조)
  -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5.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 (별지 제 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①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 서면 신청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 신청자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지정요건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치 및 관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원산지관리절차지 지정 및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원산지인증대상 신청품목							
연번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4. 원산지관리절차지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전자주소	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세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계통생산일명세서 등)						

210mm×297mm [보존용지 70g/㎡ (재활용종이)]

### Uni-Pass 에서 신청

#### - 신고서작성 >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 가인증 신청서 작성

**해면설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세 부속령

- 신청유무가 '연장' 일 경우 오른쪽에 인증번호 입력란이 생성
- 신청인정보는 로그인한 업체정보로 기본 입력
-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목록 및 원산지관리절차지 정보는 '추가', '삭제' 버튼을 통해 다중 입력가능
- 첨부서류는 원산지관리절차지 정보의 '서명' 파일포함하여 총 용량이 20MB까지 등록 가능
- 첨부서류가 대용량일 경우 신청 세관 세관기관메일로 OMB에 문의하여 별도 전송
- 원산지소명서 : 포털PC에 입력한 정보를 XML로 저장한다. (저장경로 C:\KCSIPT)
- 진지문서 > 원서문서함에 불러올 수 있다.
- 전송 : 입력한 신청서를 신청 전송한다.
- 취소 :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② 원산지 소명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원산지 소명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4.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 , Ex-Works ( )	6.원산지 결정기준			
	금 액					
7.주요생산공정						
원재료 명 세 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종류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2.직접운송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4.원산지 결정	충족 ( )		불충족 ( )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성 일자 :						

작성요령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수 출 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 산 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O" 표기합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날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 료 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S No.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 산 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12	가 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종류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 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격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23	원산지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결정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O"를 표기합니다.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③ 원산지 확인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31>

### 원산지 (포괄)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 표시 합니다. (영문)

1. 공급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전라주소)	전화 / 팩스
2. 공급처 (수출자 /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전라주소)	전화 / 팩스

### 공급물품 명세서

3. 연번	4. 품명·규격	5. 적용대상 협정	6. 품목번호 (HS 6단위)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 원산지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제공합니다.

작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성 일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보(외표용지)]

(영문)

작성 방법	
번호	기재 항목
	기재 내용
	발급번호
1	공급자
2	공급처
3	연번
4	품명·규격
5	적용대상 협정
6	품목번호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	원산지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작성 방법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징역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채료최대허용범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바. 주요공정기준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WO ~ CC ~ CTH ~ CTSH ~ BD ~ BU ~ MC ~ NC ~ CTSH ~ BD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SP ~ OP

작성 방법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물품을 일체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기입될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일체로 기재할 경우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작성 방법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충족"에 표시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R" 또는 "한국산"으로 기재합니다.
- 최초의 원산지 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2010.12.01(작성일) ~ 2011.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당수원산지확인서도 틀립니다.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④ BOM 서식 샘플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 완제품 품명 / 규격 :

○ 업체명 / 담당부서 : 000기업 / 영업부

○ 담당자 : 000

Part No.	부품명 / 규격	세관 번호 (HS No.)	원산지	수 량		단 가	가 격 소 계	제조자	구분지	인증서류	연락 전화번호
1			미상	1	set	₩7,000,000	₩7,000,000	-			
2			-	2	ea			-			
3			-	2	ea			-			
4			한국	4	ea			-			
5			-	2	ea			-			
6			-	2	ea			-			
7			-	2	ea			-			
8			-	4	ea			-			
9			-	2	ea			-			
10			-	2	ea			-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비역내산(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 완제품 1개당 소요되는 부품들 기준으로 작성함

※ 한-EFTA, 한-EU의 부가가치 기준

구분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A =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B = Ex-Works 가격 (내국세 공제후의 가격임)	부가가치 비율 = A/B
원				

※ 위 EX-Works가격은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가치를 포함하고, 완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any Internal Tax)를 공제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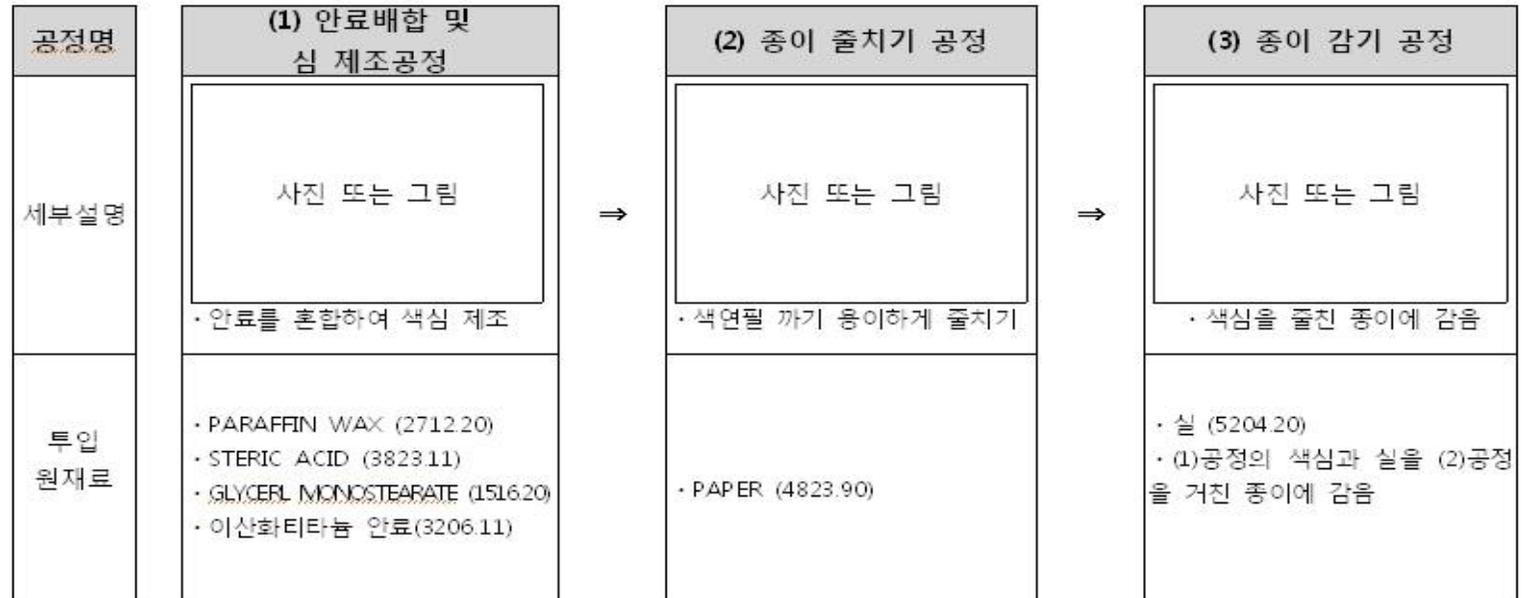
작성일자 : 2011. 3. 11  
작성자 : 0000 개발 이사 000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⑤ 제조공정도 서식 샘플

### 제조공정도(참고용) \*사진·그림은 필수요소 아님

- 제품명: COLORED PENCIL (HS 9609.10)
- 모델규격: NO.777



2010. 08. 20.

작성자: (주) 가나다 안양공장 생산팀장 홍길등 (서명)

직인명판



#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 ⑦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확약서

[별지 제 30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확약서	
신청인	상 호
	주 소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p>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p> <p>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p> <p>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또는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자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 귀하</p>	
<p>※ 동 확인서 제출 시 FTA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 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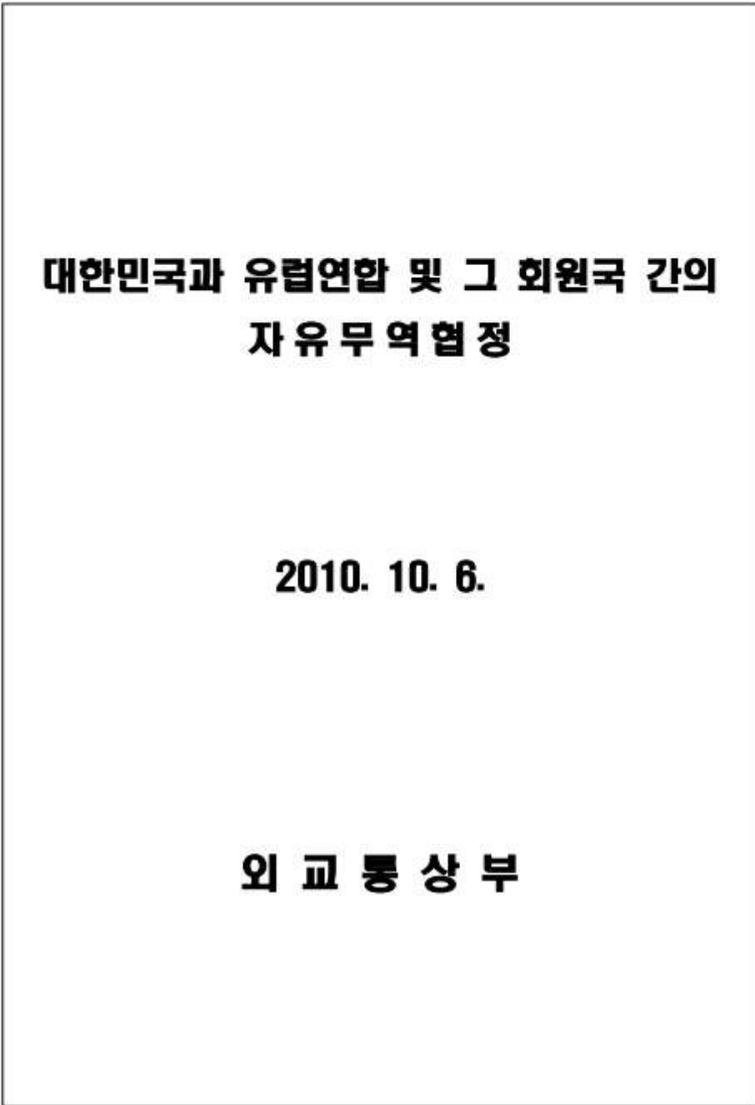
■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5. 송품장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송품장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자필 서명이 생략된 서류는 전자형태로 송부 가능하여 거래비용 절감 기대**

## 4장.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찾기

# 4.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찾기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 문

제 1 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유럽공동체 당사자 관세양허표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유럽공동체 당사자

·  
·  
·

제 15 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 정 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공동선언

터키에 대한 공동 선언

# 4.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찾기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목 차

### 제 1 절 원산지 규정

####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 제2부 ‘원산지 제품’의 정의

제2조 원산지 제품

제3조 원산지 누적

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제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9조 세트상품

제10조 중립재

제11조 재료 구분 회계

#### 제3부 영역 요건

제12조 영역 원칙

제13조 직접 운송

### 제 2 절 원산지 절차

### 제 4 절 최종규정

#### 제8부 최종규정

제33조 의정서의 개정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 부속서 목록

부속서 1: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부속서 2-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부속서 3: 송품장 신고서 문안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4.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찾기

## 부속서 1

### 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 주석 1

이 목록은 이 의정서 제5조의 의미에서 모든 제품이 충분히 작업되거나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요구된 조건을 규정한다.

#### 주석 2

### 부속서1의 내용

1. 주석1~3 : 부속서 2(품목별원산지기준)를 보는 방법
2. 주석4~6 : 부속서 2중 50류~63류에 대한 주석

# 4.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찾기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상품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1)	(2)	(3)	(4)
제 1 류	산 동물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	사용된 제1류와 제 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 3 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 크림, 요구르트, 케피어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참고] 협정문의 원산지결정기준 표현 방식

## ■ 한-EU FTA 의정서 – 부속서 2

3901부터 3921까지	플라스틱(일차제품, 웨이스트, 페어링인 것(이하 "폐기물"이라 한다)과 플라스틱 스펀지, 플라스틱 반제품과 물품	1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907.30 및 3907.40	에폭시수지 및 폴리우레탄 보네이트	2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907.20 및 3907.91	기타 폴리에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이커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3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46)47) 또는	

- 1 CTH or MC 25%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외산 재료 25% 이하
- 2 CTH(any) :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 다만, 역내 충분 생산하면 충족
- 3 SP : 역내에서 제시된 구체적 공정이 수행되어야 함

# [참고] FTA 포털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찾기

■ 열린정보 마당 ‘관세청 FTA 포털’ ( <http://fta.customs.go.kr> )

The screenshot shows the 'FTA 포털' (FTA Portal)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FTA일반', '수출할용', '수입할용', and '원산지결정'. The '원산지결정' (Origin Determination) section is highlighted, and a red dashed circle is drawn around the '세출원산지결정기준' (Export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link in the left sideba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FTA Agreement Tariffs and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page. It features a search bar for 'HS번호 / 품목명' (HS Number / Product Name) and a table of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The table is organized by HS code ranges (0, 10, 20, 30, 40, 50, 60) and lists various product categories and their corresponding origin rules.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류	미류	낙농품	기타 동물성	산수목/꽃	곡물	과일	커피/차/원시료
10	곡물	곡물의본과	채유류	식물성	기타	동물성	당류	과코야	곡물, 곡물의
20	제조/과실의	기타의	채유류	식물성	기타	동물성	당류	과코야	곡물, 곡물의
30	의약품	비료	염도, 안료, 폴리아크릴	합성	기타	동물성	당류	과코야	곡물, 곡물의
40	고무 및 그제품	합성	합성	합성	합성	합성	합성	합성	합성
50	견사	양모	면/면사	대류의사	대류의사	대류의사	대류의사	대류의사	대류의사
60	면류	의류(의류 제외)	의류(의류 제외)	의류(의류 제외)	의류(의류 제외)	의류(의류 제외)	의류(의류 제외)	의류(의류 제외)	의류(의류 제외)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 Customs Service, including the website 'UNIPASS', a search center, and various service hotlines.

감사합니다

[fta-seoul@customs.go.kr](mailto:fta-seoul@customs.go.kr)  
02-510-1484~1495

# [참고] FTA 관련 문의처

- 서울본부세관 FTA 1과 (업체별 인증)

Tel : 02) 510 - 1566 ~ 1579

Fax : 02) 2015 - 7871

e-mail : [fta-seoul@customs.go.kr](mailto:fta-seoul@customs.go.kr)

- 서울본부세관 FTA 2과(품목별 인증)

Tel : 02) 510 - 1484 ~ 1495

Fax : 02) 2015 - 7872

e-mail : [fta-seoul@customs.go.kr](mailto:fta-seoul@customs.go.kr)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Tel : 1577-8577